

보충시정질문(서면)

서강진 의원

질 문

- 적십자회비 납부방법을 일정액을 고지해서 고지서를 발부하지 말고 지로용지를 발급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우재극 의원

질 문

- 격월검침 격월고지의 대안으로 고지서 송달시 납기월을 달리하여 2장으로 고지할 수 있는지?

[별지]

< 복식부기회계제도 관련 >

1. 미수세금과 체납세금의 분류문제

- 미수세금은 지방세 징수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의미하며 납기일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수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반면 체납세금은 부과된 지방세 중에서 납기일이 경과되었으나 재정상태보고일 현재 수납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복식부기제도에서 수익의 인식시점은 징수결의 시점이고 이때 모든 세금은 미수수익으로 처리되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부과고지가 이루어지는 시세(예 :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등)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도세(예 : 취득세·등록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 재정상태보고시점인 회계연도말(12. 31)에는 자동차세 정가고지분의 경우 체납이 아닌 미수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므로 미수세금과 체납세금구분과 정의는 재정상태보고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장기미수세금 납기는 경과하지 않았지만 1년 이내 수납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실무에서 장기미수세금이 발생할 가능성은 징수유예(지방세법시행령 29조) 등 제한적인 경우이며 정상적인 납부와 체납을 구분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한 것입니다.

2. 도세 예수금 처리문제

- 도세의 경우 재정상태보고서에서 미수세금의 자산과 도세 예수금의 부채로 동시에 회계처리 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 다만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수금의 본래의 정의에 상충되는 측면과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일부에서는 도세와 관련된 세금을 계상하지 않고 실제로 부천시 수익과 관련된 징수교부금 등만을 회계처리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관련 전문학계의 자문과 토론을 거쳐 이러한 방식보다는 도세와 관련된 거래의 흐름도 모두 새로운 회계처리 방식에 포함함으로써 얻어지는 정보제공의 효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어 예수금계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 사회간접시설(Social-overhead-capital)의 감가상각 문제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이론적 논거에서 실천적 개념을 정립 제시하기에는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따라서 본 용역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더불어 회계적으로 의미있는 사회간접자본을 정의하고자 노력을 하였습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회계기준시안(19조)에 의하면 사회간접시설은 투자의 규모가 대규모적이고 해당시설로 인한 파급효과(또는 누출효과)가 광역적 또는 전국적 특성을 지니는 생산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상의 기준을 통하여 볼 때 지적하신 “구축물”과의 구분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계기준과 규정은 회계실무적 관행의 축적된 소산물이므로 복식부기팀과 해당사업 발주부서와의 협의하에 결정될 부문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간접시설의 감가상각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적절한 수선유지를 한다면 그 수명이 반영구적인 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감가상각이 필요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사회간접시설 자체를 재정상태보고서에 공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워크숍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토지와 같은 비고갈성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하되 유지보수를 통해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그리고 지적하신 미국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Board 34(GASB#34.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접근은 올바른 지적이며 현실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상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벤치마킹이 GASB#34에 국한하지 않고 영국, 뉴질랜드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던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순자산의 보고

- 순자산의 보고와 관련된 질문에 관하여는 기이 제시된 회계기준과 논점에서는 이 주제가 공공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제약성으로 체계적으로 접근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이 주제를 두고 많은 전문학자와 학회의 자문과 토론을 거쳤지만 만족할 만한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합리성을 가진 결론에는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 이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예산·회계체계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향후 시법실사과정에서 계속 Feedback 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 특히 일반정부형의 경우 납입자본 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기업에서 사용되는 자본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 무리입니다.
- 따라서 순자산 개념을 도입하였고 순자산의 구성요인, 정보특성 및 유용성, 재무제표 표현양식 등에 대하여 시법기간동안 일정한 체계를 잡을 예정입니다.
- 현재까지 제시된 결론은 민간기업과 같은 방식이 아닌 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구축성순자산, 비구축성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순자산변동보고서라는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공시될 것입니다. 이러한 순자산의 회계처리문제는 앞으로도 이론 및 실무적인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5. 기초재정상태보고서 확정에 대한 계획

- 부채와 자산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부채는 관련부서와 협의 파악이 가능하나 고정자산은 취득원가의 불분명, 품목별 내용연수 불분명 등으로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확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0. 11. 1~2001. 2. 28일까지 유형자산 조사작업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기초자산평가용역을 2001년 상반기에 실시하여 기초제정상태보고서 작성시 적용할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기이 자산조사내역을 수정 보완하여 회계적 관점에서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01. 11~12월 중에 기초제정상태보고서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6. 보고실체의 범위

- 예산편성권이 있는 부천시를 보고실체의 범위로 하여 확정하였으나 3개 구, 35개 동의 보고 실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각각 독립적인 재무제표를 생산하기에는 행정, 재정활동의 독립성, 자율적 의사결정 결여 등에 대한 자기책임성 결여 등으로 현재로서 어려우며 추후 2005년 복식부기 전국 확산시 분권화, 주민수요, 정보공급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 재무제표생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산출되며 내부거래를 상계하여 Mapping작업을 통해서 통합재무제표가 작성되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계정과목을 설정하고 있어 본 과업에서 설정한 회계과목과 과목별 연계가 어렵고 다만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연결되며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는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 평가합니다.
- 향후 복식부기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양자를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장애인복지회관에 보조금 지급시에는 비용으로 처리되며 향후 발전적으로는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성과지표

- 성과측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재무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매우 합리적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선행연구와 기존 예산제도에 대한 구조변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본격적인 성과측정은 중장기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본격적인 성과측정을 위한 전단계로서 현제도에 적합한 재정분석 자료를 받습니다. 제시받은 지표는 재정활동을 자주성·생산성·안정성·효율성 및 노력성의 5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각 지표는 기본지표와 보조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2002년 3월에 재무제표가 생산되면 이를 토대로 재정분석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검증은 2002년 4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취득세 수의 인식기준

-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20조(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납부한 이후에 부과과에서 징수결의를 하고 있는 자진신고 납부방식의 지방세입니다. 관계 공무원과의 인터뷰 및 전문가와 토의결과, 자진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의 경우에도 징수결의시점을 거래의 인식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취득세는 징수결의시 미수세금과 예수금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되며 도에서 자금송부시 운영 보고서 자주제원인 재정보전금수익으로 처리되며 매월 자금이 송부되므로 징수결의시점이 인식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중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용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적하신 내용은 주요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용역업체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하여 토의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기금별 이자수입현황 및 사용현황 >

단위 : 천원

기 금 별	연도별	이자수입액	사 용 내 역		사 용 내 용	비고
			목적사업 사 용	기금적립 및 예치		
총 계	계	9,355,579	6,920,738	2,434,841		
	2000.	2,345,695	1,888,725	456,970		
	1999.	2,123,150	1,750,334	372,816		
	1998.	1,939,058	1,363,781	575,277		
	1997.	1,681,016	1,051,715	629,301		
	1996.	1,266,660	866,183	400,477		
부천시장학기금	계	602,426	451,655	150,771		
	2000.	183,862	115,590	68,272	장학금지급	
	1999.	175,042	175,042	-	장학금지급	
	1998.	161,023	161,023	-	장학금지급	
	1997.	82,499		82,499		
	1996.					
부천시체육진흥기금	계	839,208	105,500	733,708		
	2000.	178,792	105,500	73,292	체육진흥사업추진	
	1999.	175,633		175,633		
	1998.	177,748		177,748		
	1997.	179,014		179,014		
	1996.	128,021		128,021		
부천시재해대책기금	계	30,255	10,774	19,481		
	2000.	10,774	10,774		재해대책사업추진	
	1999.	19,481		19,481		
	1998.					
	1997.					
	1996.					

기 금 별	연도별	이자수입액	사 용 내 역		사 용 내 용	비고
			목적사업 사 용	기금적립 및 예치		
부천시재난관리기금	계	36,673		36,673		
	2000.	20,143		20,143		
	1999.	16,530		16,530		
	1998.					
	1997.					
	1996.					
부천시도시가스 수요가기금	계	287,545	41,599	245,946		
	2000.	74,292	29,407	44,885	이자차액보상	
	1999.	73,968	9,545	64,423	"	
	1998.	70,033	2,610	67,423	"	
	1997.	69,114	37	69,077	"	
	1996.	138		138	"	
부천시중소기업 육성기금	계	4,781,496	4,781,496			
	2000.	1,193,655	1,193,655			
	1999.	1,076,602	1,076,602			
	1998.	966,607	966,607			
	1997.	850,657	850,657			
	1996.	693,975	693,975			
부천시자립장학급	계	355,584	296,395	59,189		
	2000.	52,500	52,500		자립장학금지급	
	1999.	59,268	59,268		"	
	1998.	64,957	64,957		"	
	1997.	76,031	67,700	8,331	"	
	1996.	102,828	51,970	50,858	"	
부천시여성발전기금	계	33,726		33,726		
	2000.	26,976		26,976		
	1999.	6,750		6,750		
	1998.					
	1997.					
	1996.					

기 금 별	연도별	이자수입액	사 용 내 역		사 용 내 용	비고
			목적사업 사 용	기금적립 및 예치		
부천시노인복지기금	계	775,771	631,679	144,092		
	2000.	188,922	131,181	57,741	노인복지사업추진	
	1999.	167,826	131,107	36,719	"	
	1998.	146,002	119,773	26,229	"	
	1997.	143,477	129,380	14,097	"	
	1996.	129,544	120,238	9,306	"	
부천시문화예술 발전기금	계	1,365,888	419,000	946,888		
	2000.	293,377	188,000	105,377	문화예술발전사업추진	
	1999.	280,197	231,000	49,197	"	
	1998.	303,877		303,877		
	1997.	276,283		276,283		
	1996.	212,154		212,154		
부천시환경보전기금	계	17,107		17,107		
	2000.	17,107		17,107		
	1999.					
	1998.					
	1997.					
	1996.					
부천시식품진흥기금	계	10		10		
	2000.	10		10		
	1999.					
	1998.					
	1997.					
	1996.					
부천시소규모유통업 육성기금	계	47,250		47,250		
	2000.	43,167		43,167		
	1999.	4,083		4,083		
	1998.					
	1997.					
	1996.					

기 금 별	연도별	이자수입액	사 용 내 역		사 용 내 용	비고
			목적사업 사 용	기금적립 및 예치		
부천시아동복지기금	계	-				
	2000.	-				
	1999.					
	1998.					
	1997.					
	1996.					
부천시폐기물처리 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계	182,640	182,640			
	2000.	62,118	62,118		주민지원홍보 및 운영활동비	
	1999.	67,770	67,770		"	
	1998.	48,811	48,811		"	
	1997.	3,941	3,941		"	
	1996.					

< 복지관별 1일 이용자 현황 >

(단위 : 명)

복지관 명	고 강	부 천	덕 유	삼 정	상 동	원 중	춘 의	한 라
규모별	종합(가)	종합(가)	일반	종합(가)	일반	종합(가)	종합(나)	종합(나)
1일 고정이용자 수	1,034	408	323	1,229	335	663	1,300	1,000

< 쓰레기봉투 제작매수, 비용, 제작회사 및 사용처 >

- 제작매수 및 비용 : 220,000매 20,646천원(2000. 9. 7)
(50ℓ 150,000매, 11,164천원, 100ℓ 70,000매 9,482천원)
- 제작회사 : 대영화학공업(주)
(소재지: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623-10 남동공단 10블록 11)
- 공공용쓰레기봉투 사용처 :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용 및 시민 대청소시 지급

< 음식물쓰레기 사료 반출일시 및 반출량, 반출처 현황 >

(단위 : kg)

연번	반출일	반출량	반출처		비고
			성명	주소	
계		72,270			
1	00. 9. 21	400	김금중	경기 시흥 화정 678-1	
2	00. 9. 26	1,200	김혜숙	부천 소사 범박 111-1	
3	00. 10. 18	1,400	최동식	가평 가평 개곡 345	
4	00. 10. 18	20	정재형	서산 안주 대음 24	
5	00. 10. 19	7,000	김철우	고성 간성 어천3리	
6	00. 10. 31	6,880	"	"	
7	00. 11. 15	4,320	최동식	가평 가평 개곡 345	
8	00. 11. 21	600	윤창환	부천 원미 원미2동 174-70	
9	00. 11. 23	400	정양상	서울 강서 가양 1080	
10	00. 11. 24	5,940	김철우	고성 간성 어천3리	
11	00. 11. 28	200	황희동	경기 시흥 안현 415-1	
12	00. 12. 5	4,000	최동식	가평 가평 개곡 345	
13	00. 12. 5	1,000	황희동	경기 시흥 안현 415-1	
14	00. 12. 11	100	정시용	부천 원미 약대 159	
15	00. 12. 18	240	박형주	부천 원미 상동 445	
16	00. 12. 22	7,040	김철우	고성 간성 어천3리	
17	00. 12. 27	2,140	황희동	경기 시흥 안현 415-1	
18	00. 12. 27	300	정시용	부천 원미 약대 159	
19	01. 1. 5	5,660	최동식	가평 가평 개곡 345	
20	01. 2. 2	7,800	김철우	고성 간성 어천3리	
21	01. 2. 3	1,200	정양상	서울 강서 방화	
22	01. 2. 13	6,420	김철우	고성 간성 어천3리	
23	01. 2. 20	8,460	최동식	가평 가평 개곡 345	